제 2336 호

2022. 7. 28.

발행인 : 동 대 문 구 청 장

편집인 : 홍 보 담 당 관

전 화 : 2127-5069

FAX : 3299-2666

선 람

구 보

차 례

◎ 규 칙

○ 제756호 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 2

○ 제757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11

◎ 고 시

○ 제2022-141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구간 변경·폐지 고시 ····· 29

○ 제2022-142호 도로명주소 고시 ····· 45

공											
람											

1.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2.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 례]

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이 필 형

2022년 7월 28일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규칙 제756호

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table>
<tr><td colspan="2">접수번호</td><td colspan="3">접수일자</td></tr>
<tr><td rowspan="2">신청인</td><td colspan="2">성명</td><td colspan="2">생년월일</td></tr>
<tr><td colspan="2">주소</td><td colspan="2">전화번호</td></tr>
<tr><td>입금계좌</td><td>은행명</td><td>계좌번호</td><td colspan="2">예금주</td></tr>
<tr><td rowspan="5">신고사항</td><td colspan="4">신고일시 년 월 일 시 분</td></tr>
<tr><td colspan="4">신고기관</td></tr>
<tr><td rowspan="2">피신고인</td><td colspan="3">성명(업소명)</td></tr>
<tr><td colspan="3">주소(업소 위치)</td></tr>
<tr><td colspan="4">신고내용</td></tr>
</table>

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table>
<tr><td colspan="2">접수번호</td><td colspan="2">접수일자</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대표자)</td><td>생년월일</td><td colspan="3">신청자격 [ ] 소유자
[ ] 점유</td></tr>
<tr><td colspan="2">주소</td><td colspan="3">전화번호</td></tr>
<tr><td rowspan="2">소유자</td><td colspan="2">성명(대표자)</td><td colspan="3">생년월일</td></tr>
<tr><td colspan="2">주소</td><td colspan="3">전화번호</td></tr>
<tr><td rowspan="5">기금융자
신청내역</td><td>대상
시설물</td><td colspan="5"></td></tr>
<tr><td>위해
요인</td><td colspan="5"></td></tr>
<tr><td>사용
용도</td><td colspan="5">1. 안전진단 등 [ ] 2. 이주비용 [ ]</td></tr>
<tr><td>소요
비용</td><td colspan="5">일금 원정(₩)</td></tr>
<tr><td>신청금
액</td><td colspan="2">일금 원정(₩
)</td><td>소요 비용 대비
신청금액 비율</td><td colspan="2">%</td></tr>
</table>

위와 같이「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추천인 동장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안전진단(임대주택 이주) 등의 필요성 증명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증명서류 3. 소요비용 총액 산정에 관한 증명서류

유의 사항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동대문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폐기물 무단투기(종량제봉투 불법제작 · 유통 · 판매 행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고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피신고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차량번호, 색상, 차종 등)		
신고 방법	방문[ ], 서면[ ], 전화[ ], 우편[ ], 그 밖의 방법[ ]		
신고사항	언제	년 월 일 시 분	
	어디서	시·군·구 읍·면·동	지역(도로, 유원지 등 지역)
	쓰레기 종류		
	신고내용 및 상황 설명		
	증거물 확보 여부(쓰레기,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		
	그 밖의 참고 사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일 년 월 일

신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

작성 방법

1. 위의 표와 같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도 가급적이면 피신고인이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동차 이용자가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차량종류, 차량색상, 차량번호, 투기자 성별 및 특기사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현 행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거래은행		⑤ 계좌번호	
신고사항	⑥ 신 고 일	년 월 일 시 분		
	⑦ 신고기관			
	피신고인	⑧ 성명 또는 업소명		
		⑨ 주소 또는 위치		
	⑩ 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

개정안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신고사항	신고일시	년 월 일 시 분	
	신고기관		
	피신고인	성명(업소명)	
		주소(업소 위치)	
	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현 행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6. 5. 12)

재난관리기금 융자(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자격	소유자·점유
	주 소				전화번호	
소유자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기금신청내역	대상 시설물					
	위 해 요 인					
	기금사용 용도	1. 안전진단 등 2. 이주비용				
	소요비용 용도	일금 원정(₩)				
	융자신청 금액	일금 원정(₩)		총소요비용의 융자신청비율		%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추천자 동장(인)

동대 문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1. 안전진단(임대주택 이주) 등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입증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동대문구금고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안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신청자격 [ ] 소유자 [ ] 점유
	주소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금융자 신청내역	대상 시설물		
	위해 요인		
	사용 용도	1. 안전진단 등 [ ] 2. 이주비용 [ ]	
	소요 비용	일금 원정(₩)	
	신청금액	일금 원정(₩)	소요 비용 대비 신청금액 비율 %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추천인 동장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안전진단(임대주택 이주) 등의 필요성 증명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증명서류 3. 소요비용 총액 산정에 관한 증명서류

유의 사항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동대문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현 행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5. 12)

폐기물 무단투기(종량제봉투 불법제작·유통·판매 행위) **신고서**

(신고자 인적사항)
① 주소 : ② 성명 :
③ 전화번호 : ④ 생년월일 :

(투기자 인적사항)
① 주소 : ② 성명 :
③ 생년월일 ④ 성별 :
⑤ 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차량번호, 색상, 차종 등)

(투기행위 사례)
① 언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디서 : 시·군·구 읍·면·동 지역(도로, 유원지등지역)
③ 쓰레기의 종류 :
④ 투기행위 상황 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여부 : 쓰레기,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등
⑥ 기타 참고사항

신고일 :
신고자 :
신고방법 : 방문·서면·전화·우편·기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

※ 위의 표와 같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도 가급적이면 상대가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자동차 이용자가 버리는 경우에는 위의 사항에 차량종류, 색상, 번호, 투기자 성별 및 특기사항을 함께 기재.

개정안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폐기물 무단투기(종량제봉투 불법제작·유통·판매 행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고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피신고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차량번호, 색상, 차종 등)		
신고 방법	방문[ ], 서면[ ], 전화[ ], 우편[ ], 그 밖의 방법[ ]		
신고사항	언제 년 월 일 시 분		
	어디서 시·군·구 읍·면·동 지역(도로, 유원지 등 지역)		
	쓰레기 종류		
	신고내용 및 상황 설명		
	증거물 확보 여부(쓰레기,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		
	그 밖의 참고 사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일 년 월 일
신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

작성 방법

1. 위의 표와 같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도 가급적이면 피신고인이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동차 이용자가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차량종류, 차량색상, 차량번호, 투기자 성별 및 특기사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규칙 제756호 [공포일자 2022년 7월 28일]

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민원인들이 알아보기 쉽고 작성하기 간편한 민원서식으로 일괄 정비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용어를 작성 주체인 국민 중심의 용어로 변경 및 국어학 관점에서 표현 정비

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맞춘 서식의 재설계

다. 개정 대상 자치법규 (규칙 3건 서식 3건)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이 필 형

2022년 7월 28일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규칙 제757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 및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금고의 지정에 필요하여 별표1로 정하는 사항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8) (17)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7) (6) (4) (3)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18
	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7) (5) (6)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계		100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28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 (8) (8) (6)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만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5) (2)
6. 그 밖에 사항		2
	가. 녹색금융 이행실적	(2)

[별표 2]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7조제1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대상 금융기관을 등급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 세부항목별(1- 가, 나의 경우는 평가 세세부 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3. <삭제>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단, 지역조합은 국내 신용조사 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평가 가능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보통예금 및 MMDA 운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18점)

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7점)

○구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수, 관내 무인점포 및 관내 ATM 설치 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단,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5점)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6점)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8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6점)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점)

○ OCR센터, ETAX 등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

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2점)

○ 구와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단, 현금출연만 인정)

6. 그 밖에 사항 (2점)

가. 녹색금융 이행실적 (2점)

○ 금융기관이 탈석탄 선언을 하였는지와 그 이행 실적,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Ⅱ-3, 4의 지방세에는 세외수입을 포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 6.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 1. ---------- 「은행법」 및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 2. ~ 6. (현행과 같음)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생 략) ② 제6조 단서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1. ~ 5. (생 략) <신 설>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금고의 지정에 필요하여 별표1로 정하는 사항

현 행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1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0)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및 수시입출식 예금금리	(3)

개 정 안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제7조제2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8)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7)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및 수시입출식 예금금리	(3)

현 행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18
	가. 관내지점의 수 및 구민 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7)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4)
<신 설>	<신 설>	

개 정 안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18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7)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5)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8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2)
6. 그 밖에 사항		2
	가. 녹색금융 이행실적	(2)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Ⅰ.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대상 금융기관을 등급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평가 세부항목별 금융기관의 순위에 따라 부여하는 점수 하한을 배점 상한의 60% 미만으로 할 수 있고, 순위 및 등급간 점수편차는 제2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단, 지역조합은 국내 신용조사 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평가 가능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별표 2]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7조제1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대상 금융기관을 등급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 세부항목별(1– 가,나의 경우는 평가 세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및 등급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3. <삭제>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단, 지역조합은 국내 신용조사 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평가 가능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현 행	개 정 안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0점)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점)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 ○보통예금 및 MMDA 운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3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보통예금 및 MMDA 운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3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현 행	개 정 안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18점) 가.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5점) ○구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단,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6점)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7점)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18점) 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7점) ○구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수, 관내 무인점포 및 관내 ATM 설치 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단,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5점)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6점)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5점)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점)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점)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점) ○OCR센터, ETAX 등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8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6점)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점) ○OCR센터, ETAX 등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현 행	개 정 안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9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금융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4점) ○구와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단, 현금출연만 인정)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금융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2점) ○구와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단, 현금출연만 인정)
<신 설>	6. 그 밖에 사항 (2점) 가. 녹색금융 이행실적 (2점) ○금융기관이 탈석탄 선언을 하였는지와 그 이행실적,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Ⅱ-3, 4의 지방세에는 세외수입을 포함	※ Ⅱ-3, 4의 지방세에는 세외수입을 포함

관계법규 발췌문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규칙 제757호 [공포일자 2022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개정사항 및 기후위기·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평가기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제2조)

나. 금고지정 평가기준 추가(제7조)

다.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일부 변경(별표 1)

라.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의 배점과 평가내용 일부 변경(별표 2)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2 - 141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구간 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고시일(효력발생일) : 2022. 7. 28.
2. 고시방법 : 구보, 구 홈페이지 게시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 · 폐지에 관한 사항 (붙임 조서 참조)
4.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http://www.ddm.go.kr)를 참고하거나 동대문구청 부동선정보과(☎2127-44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도로구간 변경·폐지 조서(도면포함) 1부. 끝.

❑ 도로구간 변경 조서(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순번	구 분	도로명	도로구간			길이 (m)	폭 (m)	기초 간격 (m)
			시작지점	끝지점	중심선			
1	변경 전	안암로12길	용두동 732-12	용두동 201-23	도면참조	197	7	10
	변경 후	안암로12길	**용두동 732-12**	**용두동 768**	도면참조	**97**	**7**	**10**
2	변경 전	안암로6가길	용두동 776-2	용두동 770-1	도면참조	139	7	10
	변경 후	**안암로6가길**	**용두동 776-2**	**용두동 763-21**	도면참조	**75**	**7**	**10**
3	변경 전	무학로43길	용두동 150-4	용두동 201-24	도면참조	361	7	10
	변경 후	**무학로43길**	**용두동 150-4**	**용두동 201-7**	도면참조	**118**	**7**	**10**
4	변경 전	무학로45길	용두동 148-75	용두동 766-11	도면참조	408	7	10
	변경 후	**무학로45길**	**용두동 148-75**	**용두동 763-21**	도면참조	**365**	**7**	**10**
5	변경 전	무학로47길	용두동 747	용두동 771	도면참조	290	7	10
	변경 후	**무학로47길**	**용두동 747**	**용두동 774**	도면참조	**190**	**7**	**10**
6	변경 전	한빛로	용두동 766-11	용두동 766-11	도면 참조	104	7	10
	변경 후	**한빛로**	**용두동 766-11**	**용두동 776-2**	도면 참조	**157**	**14**	**10**
7	변경 전	한빛로7길	용두동 150-35	용두동 187-14	도면 참조	144	7	10
	변경 후	**한빛로7길**	**용두동 150-35**	**용두동 150-35**	도면 참조	**46**	**7**	**10**

※ 도로구간과 기초번호의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및 사물주소 대상 없음

기초번호		도로유형	변경사유	관 할 행정구역	고시일 (효력발생일)
시작지점	끝지점				
1	36	지상도로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변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07.28. (2022.07.28.)
1	**20**				
1	26	지상도로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변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07.28. (2022.07.28.)
1	**14**				
1	68	지상도로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변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07.28. (2022.07.28.)
1	**24**				
1	78	지상도로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변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07.28. (2022.07.28.)
1	**72**				
1	58	지상도로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변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07.28. (2022.07.28.)
1	**38**				
41-1	41-24	지상도로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변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07.28. (2022.07.28.)
41-1	**41-26**				
1	28	지상도로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변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07.28. (2022.07.28.)
1	**8**				

❑ 도로구간 변경 도면(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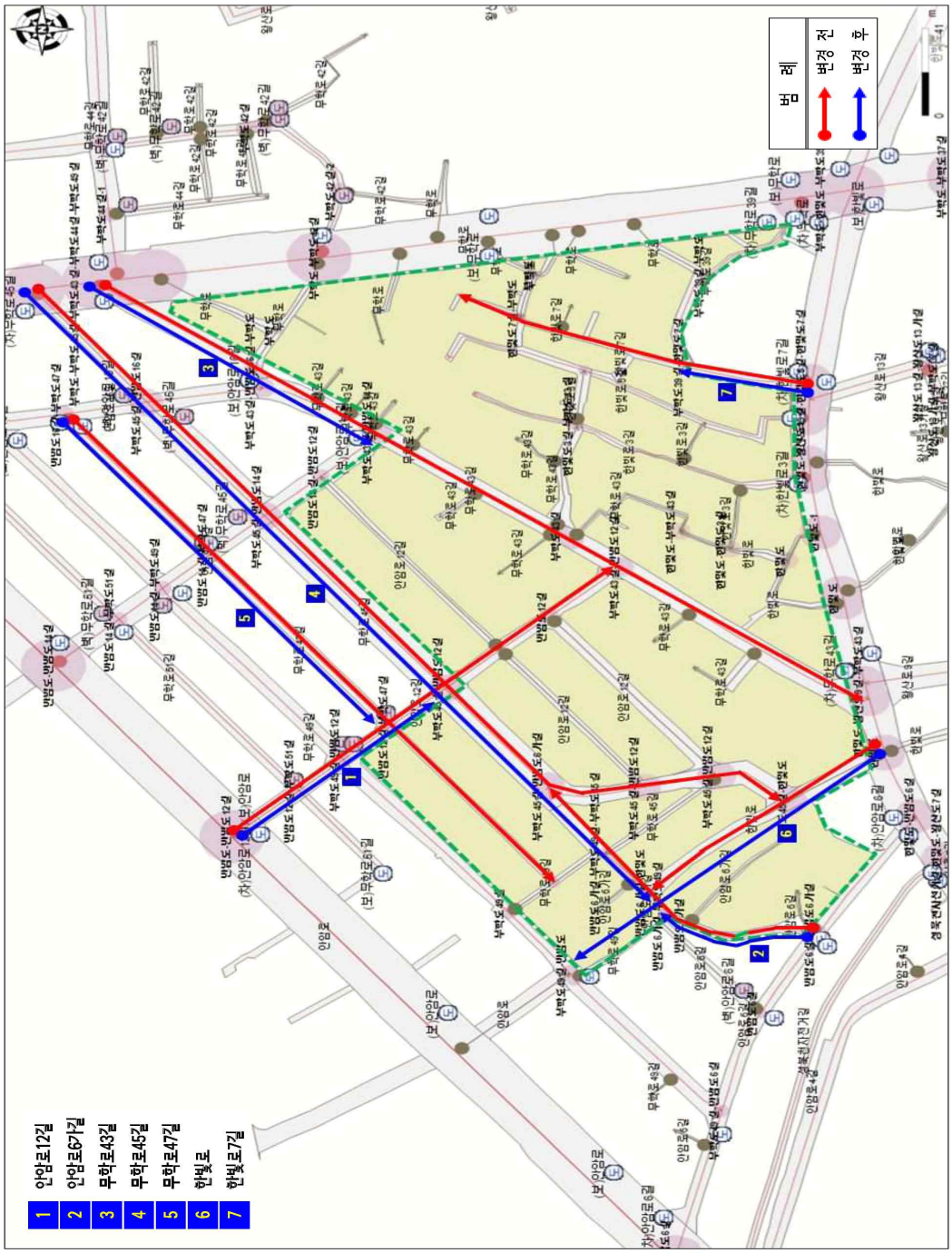

도로구간 폐지 조서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도로구간 폐지 조서(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순번	구 분	도로명	도로구간			길이 (m)	폭 (m)	기초 간격 (m)
			시작지점	끝지점	중심선			
1	변경 전	무학로 (1차종속구간)	용두동 150-32	용두동 150-48	도면참조	25	3	10
	변경 후	**도로구간 폐지**			**도면참조**			
2	변경 전	무학로 (1차종속구간)	용두동 150-32	용두동 152-8	도면참조	31	2	10
	변경 후	**도로구간 폐지**			**도면참조**			
3	변경 전	무학로 (1차종속구간)	용두동 150-32	용두동 150-48	도면참조	46	4	10
	변경 후	**도로구간 폐지**			**도면참조**			
4	변경 전	무학로 (1차종속구간)	용두동 185-2	용두동 150-48	도면참조	26	2	10
	변경 후	**도로구간 폐지**			**도면참조**			
5	변경 전	무학로 (1차종속구간)	용두동 150-4	용두동 188-2	도면참조	48	2	10
	변경 후	**도로구간 폐지**			**도면참조**			
6	변경 전	무학로 (1차종속구간)	용두동 150-4	용두동 150-40	도면참조	60	4	10
	변경 후	**도로구간 폐지**			**도면참조**			
7	변경 전	무학로 (1차종속구간)	용두동 150-4	용두동 150-49	도면참조	49	3	10
	변경 후	**도로구간 폐지**			**도면참조**			

기초번호		도로유형	폐지사유	관 할 행정구역	고시일 (효력발생일)
시작지점	끝지점				
169-1	169-6	지상도로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07.28. (2022.07.28.)
171-1	171-6	지상도로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07.28. (2022.07.28.)
173-1	173-8	지상도로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07.28. (2022.07.28.)
175-1	175-2	지상도로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07.28. (2022.07.28.)
179-1	179-8	지상도로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07.28. (2022.07.28.)
181-1	181-10	지상도로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07.28. (2022.07.28.)
187-1	187-8	지상도로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07.28. (2022.07.28.)

❑ 도로구간 폐지 조서(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순번	구 분	도로명	도로구간			길이 (m)	폭 (m)	기초 간격 (m)
			시작지점	끝지점	중심선			
8	변경 전	무학로39길 (주도로)	용두동 146-10	용두동 150-48	도면참조	102	4	10
	변경 후	**도로구간 폐지**			**도면참조**			
9	변경 전	무학로43길 (1차종속구간)	용두동 201-23	용두동 753-7	도면참조	12	2	10
	변경 후	**도로구간 폐지**			**도면참조**			
10	변경 전	무학로43길 (1차종속구간)	용두동 201-23	용두동 754-14	도면참조	28	2	10
	변경 후	**도로구간 폐지**			**도면참조**			
11	변경 전	무학로43길 (1차종속구간)	용두동 201-23	용두동 201-3	도면참조	21	2	10
	변경 후	**도로구간 폐지**			**도면참조**			
12	변경 전	무학로43길 (1차종속구간)	용두동 201-23	용두동 755-15	도면참조	36	2	10
	변경 후	**도로구간 폐지**			**도면참조**			
13	변경 전	무학로43길 (1차종속구간)	용두동 201-23	용두동 199-46	도면참조	65	2	10
	변경 후	**도로구간 폐지**			**도면참조**			
14	변경 전	무학로43길 (1차종속구간)	용두동 201-23	용두동 201-23	도면참조	64	2	10
	변경 후	**도로구간 폐지**			**도면참조**			

기초번호		도로유형	폐지사유	관 할 행정구역	고시일 (효력발생일)
시작지점	끝지점				
1	18	지상도로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07.28. (2022.07.28.)
32-1	32-2	지상도로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07.28. (2022.07.28.)
40-1	40-4	지상도로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07.28. (2022.07.28.)
54-1	54-2	지상도로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07.28. (2022.07.28.)
60-1	60-4	지상도로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07.28. (2022.07.28.)
41-1	41-14	지상도로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07.28. (2022.07.28.)
39-1	39-13	지상도로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07.28. (2022.07.28.)

❑ 도로구간 폐지 조서(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순번	구 분	도로명	도로구간			길이 (m)	폭 (m)	기초 간격 (m)
			시작지점	끝지점	중심선			
15	변경 전	무학로43길 (1차종속구간)	용두동 201-23	용두동 187-63	도면참조	12	2	10
	변경 후	**도로구간 폐지**			**도면참조**			
16	변경 전	무학로43길 (1차종속구간)	용두동 201-7	용두동 187-59	도면참조	14	2	10
	변경 후	**도로구간 폐지**			**도면참조**			
17	변경 전	무학로43길 (1차종속구간)	용두동 201-7	용두동 187-68	도면참조	12	2	10
	변경 후	**도로구간 폐지**			**도면참조**			
18	변경 전	무학로43길 (1차종속구간)	용두동 150-40	용두동 187-64	도면참조	17	2	10
	변경 후	**도로구간 폐지**			**도면참조**			
19	변경 전	무학로45길 (1차종속구간)	용두동 770-1	용두동 771	도면참조	55	3	10
	변경 후	**도로구간 폐지**			**도면참조**			
20	변경 전	무학로49길 (1차종속구간)	용두동 776-2	용두동 771	도면참조	45	3	10
	변경 후	**도로구간 폐지**			**도면참조**			
21	변경 전	안암로12길 (1차종속구간)	용두동 769-2	용두동 750-23	도면참조	86	3	10
	변경 후	**도로구간 폐지**			**도면참조**			

기초번호		도로유형	폐지사유	관 할 행정구역	고시일 (효력발생일)
시작지점	끝지점				
25-1	25-2	지상도로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07.28. (2022.07.28.)
23-1	23-2	지상도로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07.28. (2022.07.28.)
19-1	19-2	지상도로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07.28. (2022.07.28.)
17-1	17-2	지상도로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07.28. (2022.07.28.)
74-1	74-10	지상도로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07.28. (2022.07.28.)
71-1	71-10	지상도로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07.28. (2022.07.28.)
26-1	26-18	지상도로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07.28. (2022.07.28.)

❑ 도로구간 폐지 조서(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순번	구 분	도로명	도로구간			길이 (m)	폭 (m)	기초 간격 (m)
			시작지점	끝지점	중심선			
22	변경 전	안암로12길 (1차종속구간)	용두동 769-2	용두동 770	도면참조	96	6	10
	변경 후	**도로구간 폐지**			**도면참조**			
23	변경 전	안암로12길 (1차종속구간)	용두동 769-2	용두동 770	도면참조	105	3	10
	변경 후	**도로구간 폐지**			**도면참조**			
24	변경 전	안암로6가길 (1차종속구간)	용두동 764-14	용두동 772	도면참조	59	2	10
	변경 후	**도로구간 폐지**			**도면참조**			
25	변경 전	안암로6가길 (1차종속구간)	용두동 771	용두동 763-22	도면참조	24	2	10
	변경 후	**도로구간 폐지**			**도면참조**			
26	변경 전	안암로6길 (1차종속구간)	용두동 776-2	용두동 765-17	도면참조	22	2	10
	변경 후	**도로구간 폐지**			**도면참조**			
27	변경 전	한빛로 (1차종속구간)	용두동 201-24	용두동 201-24	도면참조	48	2	10
	변경 후	**도로구간 폐지**			**도면참조**			
28	변경 전	한빛로 (1차종속구간)	용두동 201-24	용두동 199-46	도면참조	63	2	10
	변경 후	**도로구간 폐지**			**도면참조**			

기초번호		도로유형	폐지사유	관 할 행정구역	고시일 (효력발생일)
시작지점	끝지점				
30-1	30-26	지상도로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07.28. (2022.07.28.)
25-1	25-26	지상도로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07.28. (2022.07.28.)
10-1	10-12	지상도로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07.28. (2022.07.28.)
15-1	15-6	지상도로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07.28. (2022.07.28.)
29-1	29-6	지상도로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07.28. (2022.07.28.)
49-1	49-8	지상도로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07.28. (2022.07.28.)
51-1	51-12	지상도로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07.28. (2022.07.28.)

❑ 도로구간 폐지 조서(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순번	구 분	도로명	도로구간			길이 (m)	폭 (m)	기초 간격 (m)
			시작지점	끝지점	중심선			
29	변경 전	한빛로3길 (주도로)	용두동 201-24	용두동 187-42	도면참조	140	2	10
	변경 후	**도로구간 폐지**			**도면참조**			
30	변경 전	한빛로3길 (1차 종속구간)	용두동 199-19	용두동 205-1	도면참조	35	2	10
	변경 후	**도로구간 폐지**			**도면참조**			
31	변경 전	한빛로3길 (1차종속구간)	용두동 201-23	용두동 150-48	도면참조	26	5	10
	변경 후	**도로구간 폐지**			**도면참조**			
32	변경 전	한빛로3길 (1차종속구간)	용두동 199-19	용두동 199-19	도면참조	21	2	10
	변경 후	**도로구간 폐지**			**도면참조**			
33	변경 전	한빛로5길 (주도로)	용두동 201-24	용두동 187-38	도면참조	162	3	10
	변경 후	**도로구간 폐지**			**도면참조**			
34	변경 전	한빛로7길 (1차종속구간)	용두동 152-21	용두동 152-21	도면참조	14	2	10
	변경 후	**도로구간 폐지**			**도면참조**			

기초번호		도로유형	폐지사유	관 할 행정구역	고시일 (효력발생일)
시작지점	끝지점				
1	28	지상도로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07.28. (2022.07.28.)
3-1	3-10	지상도로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07.28. (2022.07.28.)
20-1	20-6	지상도로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07.28. (2022.07.28.)
10-1	10-2	지상도로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07.28. (2022.07.28.)
1	32	지상도로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07.28. (2022.07.28.)
20-1	20-4	지상도로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07.28. (2022.07.28.)

❑ 도로구간 폐지 도면(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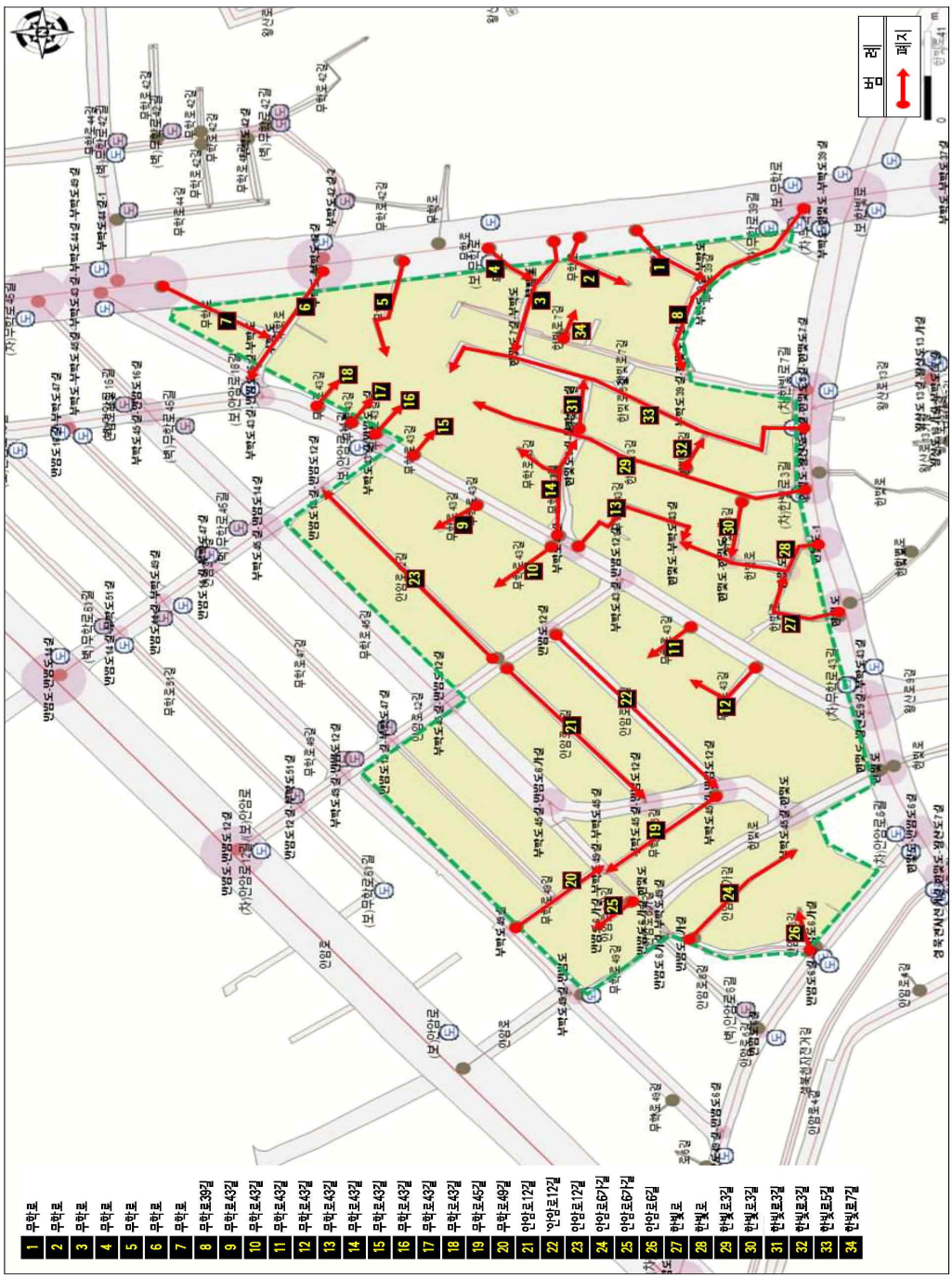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2 - 142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구 도로명주소 이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도로명주소 폐지

연번	종전주소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1	용두동 23-9	왕산로 144	2022.07.28.	건축물 철거
2	용두동 23-19	왕산로 140-1	2022.07.28.	건축물 철거
3	용두동 23-32	고산자로34길 17	2022.07.28.	건축물 철거
4	제기동 1141-13	약령중앙로 25-16	2022.07.28.	건축물 철거
5	전농동 219-12	전농로23길 66-1	2022.07.28.	건축물 철거
6	답십리동 266-1	전농로 38	2022.07.28.	건축물 철거
7	장안동 457-3	천호대로93길 7	2022.07.28.	건축물 철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2127-4222)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 및 위치관련 전자시스템은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 변경신청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사용합니다.